보건복지부	보 도 설 명 자 료		
배 포 일	2021. 8. 5. / (총 3매)	담당부서	기초생활보장과
과 장	민 영 신	전 화	044-202-3051
담 당 자	임 동 민		044-202-3054

◈ 긴급복지 지원은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으며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에 따른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(8월 5일 한국일보, "코로나 생계공습 긴급복지 신청 2배 늘고 기초생활수급 230만 명 육박" 보도 관련)

□ 보도내용

○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이래 생활고로 복지 급여를 받는 인구가 급증한 것(긴급복지지원 2배 증가, 기초생활수급자 230만 명 육박)

□ 설명내용

○ **긴급복지 지원**은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**선정기준을 한시적**('20.3월~) **대폭 완화**하여 지원 가구가 증가하였습니다.

* 일반재산 기준 : 1억 8,800만 원→ 3억 5,000만 원(대도시기준)
** 금융재산 기준(생활준비금 공제율) : 기준 중위소득 817만 원 → 1,231만 원 공제

○ 또한, **기초생활 수급자* 수의 증가**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제도 **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**에 따른 것**임을 알려드립니다.

* 근로능력이 없거나, 미약한 경우로 소득·재산 기준이 일정 이하(기준 중위소득 50%)인 경우 수급 가능
** **생계급여 17.6만 명, 의료급여 7.4만 명, 주거급여 73.5만 명**의 수급자를 **추가로 지원**('21.12월 기준), '22년 10월. **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**로 **약 22만 가구(약 31만 명) 추가로 지원** 예정임

< 참고 > 1. 긴급복지지원 개요
2.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개요

OPEN 공공누리 |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

참고 1 긴급복지지원 개요

□ **지원대상** : ① **위기사유 발생**으로 ② **생계유지가 곤란**한 ③ **저소득층**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

□ **위기 사유**(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,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, 시행규칙 제1조의 2)

1. 주소득자의 **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** 등으로 **소득을 상실**한 경우
2. 중한 **질병 또는 부상**을 당한 경우
3. 가구구성원으로부터 **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** 등을 당한 경우
4. **가정폭력** 또는 **성폭력**을 당한 경우
5. **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**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6.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**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**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7.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**실직**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8.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**지자체 조례**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   - 소득활동 미미(가구원 간호·간병·양육), 기초수급 중지·미결정, 수도·가스 중단, 사회보험료·주택임차료 체납 등
9. 그 밖에 **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**하는 경우

① 주소득자와의 **이혼**, ② **단전**된 때, ③ 교정시설 **출소자** 생계 곤란, ④ 가족으로부터 **방임·유기**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**노숙**을 하는 경우, ⑤ **사각지대발굴,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**으로서 관련 부서(기관)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, ⑥ (한시) **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**한 경우, ⑦ (한시) **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**한 경우

□ **소득·재산기준**(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, 적정성 심사 시 판단)

○ (소득)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
가구규모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
원/월	1,370,873	2,316,059	2,987,963	3,657,218	4,318,030	4,971,452	5,622,899

※ 8인 이상 가구의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651,446원씩 증가(8인 가구 6,274,345원)

○ (재산)

	대도시	중소도시	농어촌
당초	1억 8,800만 원	1억 1,800만 원	1억 100만 원
1차 한시 완화('20.3.23.)	2억 5,700만 원	1억 6,000만 원	1억 3,600만 원
2차 한시 완화('20.7.31.)	3억 5,000만 원	2억 원	1억 7,000만 원

○ (금융재산) 500만 원(생활준비금 공제: 4인 가구 808만 원)→
1차 완화 974만 원(4인 가구)→ **2차 완화 1,212만 원**(4인 가구/20년기준)

□ 지원내용

종 류			지원내용	지원금액
금전·현물 지원	위기상황 주급여	생계	○ 식료품비,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	1,267,000원 (4인 기준)
		의료	○ 각종 검사,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- 300만 원 이내(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)	300만 원 이내
		주거	○ 국가·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-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	643,200원 이내 (대도시, 4인 기준)
		복지시설	○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-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	1,450,500원 (4인 기준)
	부가급여	교육	○ 초·중·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	초 221,600원/중 352,700원/고 432,200원 및 수업료·입학금
		그밖의 지원	○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- 동절기(10월~3월) 연료비 : 98천원/월 - 해산비(70만원)·장제비(80만원)·전기요금(50만원이내) : 각 1회	
민간기관·단체 연계지원 등			○ 사회복지공동모금회,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프로그램으로 연계 ○ 상담 등 기타 지원	

참고 2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개요

□ 추진 경과

○ 「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('18~'20)」및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로드맵에 의거 '17년 11월부터 정상 추진 중

내 용		추진 일정
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	· 부양의무자 가구 및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	'17.11~
	·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	'19.1~
	·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경우	'19.1~
	· 부양의무자 일반·금융·자동차 재산 환산율 인하(4.17% → 2.08%)	'19.9~
추가 완화 및 2차 종합계획	· 수급자 가구에 만 30세 미만 보호종료아동이 있는 경우	'19.1~(추가)
	· 수급자 가구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족인 경우	'19.1~(추가)
	·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	'20.1~(추가)
	· 부양비 인하(15~30% → 10%)	'20.1~(추가)
	· 수급자 가구에 노인·한부모가구가 있는 경우	'21.1~
	· 그 외 가구 (부양의무자 기준 폐지)	**'22.1 (2차추경 '21.10~)**

- 생계급여 전 연령층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당초 계획('22년)보다 앞당겨 **'21년 하반기부터 조기 시행**('21.10~)

* 고소득·고재산(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등 9억 원 초과)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 지속 적용

<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에 따른 수급자 증가 현황>

연 도	수급자 가구 수 (시설수급 제외)	수급자 수 (천명)	인구 (천명)	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(%)
2017	1,032,996	1,582	51,779	3.06
2018	1,165,175	1,744	51,826	3.37
2019	1,281,759	1,881	51,850	3.63
2020	1,459,059	2,134	51,829	4.11
2021.6월	1,557,121	2,295	51,702	4.44